



# 공산품안전관리 제도의 혁신적 개편 추진동향

생활복지표준과 공업연구원 임헌진  
02)509-7247, hjlim@ats.go.kr

## 1. 공산품 안전관리의 필요성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복, 그릇, 가구 등의 기본적인 생활제품 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제품인 장난감, 인라인스케이트, 텔레비전 등 약 15,000 여종에 달하는 제품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통상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등의 유통매장을 통하여 구입하게 된다. 이때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제조자와 유통자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창출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을 결탈들이 되는 각 나라의 규정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세계 무역 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발족되어, 세계 각국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감시하고 있다.

한편,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어 기도가 막혀 숨진다는지, 가정주부가 압력솥의 뚜껑을 열다가 화상을 입는다는지, 선풍기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 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6년에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6,000 여건, 교통사고가 45,000 여건, 가정과

여가 활동중에 일어난 안전사고가 83,000 여건이라는 통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자료는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입는 안전사고의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는 제품의 사용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 각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도 자국민의 안전(safety), 건강(health), 환경(environment)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규제의 수준이 국제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공산품 안전관리 현황

우리나라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94개 품목의 공산품을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검사, 안전검정, 품질표시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검사제도는 생명·신체에 위해정도가 큰 작동완구, 휴대용 예초기날 등 39개 품목에 대하여 해당 공산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CE**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토록 하는 제도이다. 안전검정제도는 기업이 원할 경우 안전검정을 받아 **인원**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는 임의제도이며, 물류지, 아동용



이단침대 등 3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품질 표시제도는 취급 등 주의가 필요하거나 소비자가 구입 시 식별을 쉽게 하도록 의류제품 등 24개 품목에 표시기준의 준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원이 금년에 작동완구, 키보드, 비비탄총 등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중 수입제품의 60%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안전검사 합격품의 59%가 안전검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불법·불량 공산품의 시중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함유가 의심되는 비작동완구, 학용품, 의류 등의 품목은 안전검정대상이나 사업자가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단속의 미비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 조치가 불가함을 악용한 신중 위해 제품의 편법 출시의 우려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공산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자 안전관리제도 및 방법 등의 혁신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3. 그간의 추진상황

#### (1)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사전·자율관리체제로 개편 추진

최근 저가 공산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안전검사 의무규정이 대폭 축소되어 나머지 품목은 법적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검정제도와 품질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안전검사제도는 선진국에서 안전자율확인제도(SDoC)로 관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치명적인 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병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제품이 다양해지고 안

전기준도 세분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 자율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정부 주도적인 지시규제(commandregulation)에서 사전·자율관리형 성과규제(performance regulation)로 전환하는 반면에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급자 안전자율확인제도를 공산품 안전관리의 근간으로 하고,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불량품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은 공장심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으로 철저히 관리하며, 새로 안전위해성이 대두되는 공산품은 관리품목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위해경보발령제도를 신설하고, 특히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표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체처 심사를 거쳐 9월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 신설

현재 세정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들이 어린이들도 쉽게 뚜껑을 열 수 있는 일반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제품에는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에는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심각한 위해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생리학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소량을 마시더라도 어른에 비하여 치명적일 수 있으며 중독에도 약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선진국은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에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3) 신상품 및 위해가능성이 큰 품목의 안전기준 제정·조정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신종 제품이 개발되고,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같이 새로운 유해성이 확인되는 등 안전기준의 제정 및 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안전기준 설정시 업계의 피해 뿐만 아니라 통상다찰 야기의 소지도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그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거나 국제적인 기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완구, 돌휴지, 기저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제품의 위해 정도 및 무역상 기술장벽(WTO/TBT)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 및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4)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안전교육·캠페인 전개

불량제품을 구입하거나 안전검사 합격품 사용시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홍보 티플렛과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상시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공산품 안전에 기여도가 큰 소비자 기관 및 시민단체 직원, 시·도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는 「표준의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안전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안전한 제품을 식별 요령을 교육하기 위해 완구·문구 박람회 전시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 [붙임]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공산품의 취급·사용으로 인한 안전위해 등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안전검정제도 및 품질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1)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공산품 안전검사제도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검사기관에서 모델별로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에 「검'자 마크 및 안전검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유통토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으로 표 1에서와 같이 유모차 등 39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안전검사기준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8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검사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품 설명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안전검사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업체는 해당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에 안전검사합격표시(「검'마크)와 안전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표2>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목록**

분 야	안전검사대상공산품 (31 품목)
섬 유 (4)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가속눈썹을 제외한다). 텐트, 반사안전조끼, 양탄자
화 학 (8)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를 제외한다), 합성세제, 벽지 및 종이장판지, 물휴지, 수경, 불꽃놀이제품, 양식용 부자, 자동차용 타이어
기 계 (2)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토 건 (1)	물탱크
생활용품 (16)	학용품, 롤러스케이트, 아동용이단침대, 유아용삼륜차, 비작동원구, 유아용말랑이, 뽕뽕이, 치아용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는 제외한다), 식탁용품·주방용품, 간이빨래걸이, 가족제품, 안경테, 선글라스, 우산 및 양산, 보안경(TV용), 스키용구, 스케이트보드, 침대매트리스 보냉용기

**<표3> 품질표시대상공산품 목록**

분 야	품질표시대상공산품 (24 품목)
섬유제품(4))	의류, 한복, 수의류, 그밖의 섬유제품(양말,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쇼울, 넥타이, 이불, 요, 가방)
화학제품 (10)	화장비누, 표백제, 화장지(두루마리 및 평면), 1회용기저귀(유아용, 성인용), 합성수지제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연질염화비닐(PVC)호스, 합성수지제필름, 섬유유연제, 습기제거제, 탈취제
생활용품(6)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안경테, 선글라스, 우산·양산, 가구
귀금속품 (4)	목걸이, 반지, 수저, 그 밖의 귀금속가공상품